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2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정책사업을 신설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예수금,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를 변경하고, 시금고 금리 인상에 따라 예수금 이자 상환액 증액,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을 위한 공사 용자금을 반영하고자 함

- 나. 운용규모 : 1,319,521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76,765백만원 증가)

〈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 : 백만원)

〈 수입계획 〉					〈 지출계획 〉						
구 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			증 감 (B-A)	구 분	당초 (C)	변경계획			증 감 (D-C)
		1차	2차	3차(B)				1차	2차	3차(D)	
합 계	1,242,756	1,224,408	1,323,826	1,319,521	76,765	합 계	1,242,756	1,224,408	1,323,826	1,319,521	76,765
용 자 금 원리금회수	2,644	3,088	3,206	3,353	709	용 자 금	0	0	0	85,700	85,700
예 수 금	943,056	926,656	1,050,948	1,046,448	103,392	예 탁 금	878,200	861,800	831,000	831,000	-47,200
예 탁 금 원금회수	186,000	186,000	161,000	161,000	-25,000	예수원리금 상 환	92,453	82,136	83,517	85,232	-7,221
예 치 금 회 수	77,661	76,807	76,807	76,807	-854	예 치 금	272,096	280,465	409,302	317,582	45,486
이 자 수 입	33,395	31,857	31,865	31,913	-1,482	기 본 경 비	7	7	7	7	0

※ 1차, 2차 변경은 정책사업 변경규모가 20% 미만이므로 소관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(제311회, '22.7.25.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용자금원리금회수 : 709백만원 증가 (2,644백만원 → 3,353백만원)
 - ▶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민간용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증액 (968백만원 → 1,677백만원)
- 예수금 수입 : 103,392백만원 증가 (943,056백만원 → 1,046,448백만원)
 - ▶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수입 조정

변 동 내 역

-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: 25,000백만원 → 26,200백만원 / -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: 1,721백만원 → 1,048백만원
- 도시개발특별회계 : 75,600백만원 → 124,900백만원 / -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: 223,500백만원 → 217,600백만원
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부담금계정 : 48,300백만원 → 33,800백만원
-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: 336,500백만원 → 336,800백만원
-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: 229,900백만원 → 258,700백만원
- 소방특별회계 : 2,535백만원 → 2,400백만원 / -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: 0 → 45,000백만원

-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: 25,000백만원 감소 (186,000백만원 → 161,000백만원)
 - ▶ [일반회계]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자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전액 감액(25,000백만원 → 0)
- 예치금 회수 수입 : 854백만원 감소 (77,661백만원 → 76,807백만원)
 - ▶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감액(77,661백만원 → 76,807백만원)
- 이자수입 : 1,482백만원 감소 (33,395백만원 → 31,913백만원)
 - ▶ [공공예금 이자수입] 실제 징수액 반영하여 감액(5,931백만원 → 4,758백만원)
 - ▶ [예탁금 이자수입] 2021년 말 예탁 시기 반영하여 감액(27,464백만원 → 27,155백만원)

○ 지출계획 변경 : 76,765백만원 증가

- 용자금 : 85,700백만원 증가 (0 → 85,700백만원)
 - ▶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울에너지공사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 지원을 위한 용자금 신규 반영 (0 → 85,700백만원)
- 예탁금 : 47,200백만원 감소 (878,200백만원 → 831,000백만원)
 - ▶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탁 규모 조정

변 동 내 역

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: 271,800백만원 → 227,500백만원 / -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: 566,400백만원 → 563,500백만원

- 예수금 원리금 상환 : 7,221백만원 감소 (92,453백만원 → 85,232백만원)
 - ▶ [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] 2021년말 자원 부족으로 예탁 철회하여 예수금 원금 상환 감액(16,300백만원 → 0)
 - ▶ [예수금 이자상환]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증액(15,463백만원 → 24,542백만원)

- 예치금 : 45,486백만원 증가 (272,096백만원 → 317,582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수입계획 중 예수금,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, 예치금 회수 수입 등을 당초 계획보다 767억 6,500만원 증액한 1조 3,195억 2,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당초 지출계획액보다 767억 6,5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임
 - 동 계정의 경우,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(1조 2,427억 4,900만원)보다 $\Delta 0.7\%$, $\Delta 89$ 억 3,500만원 감액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 -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용자금의 경우, 동 계정이 당초 지출계획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포함되지 않고, 내부거래지출이나 보전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정책사업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
- 동 계정에 대한 변경안은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대비 116.4% 인상됨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 정책사업인 ‘투자기관 금융지원’을 신설하고, 세부사업으로 ‘공사 직접 용자’에 857억원을 순증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됨

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로 수입되는 가스 가격이 상승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이 정하는 ‘공사·공단 등 융자금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매출공채 즉,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이 편성되는 지출과목으로 판단됨
 -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기준대로 지방채 발행으로만 지원가능한 경우에는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 편성을 요청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따라 「지방채 발행 동의안」이 제출되어야 하나 '22년 11월 현재까지 관련 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음
 - 기금운용부서가 ‘공사·공단 등 융자금’의 의미를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기타 자금을 이용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
 - 행정안전부에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중 공사·공단 융자금에 관해 해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정책사업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변경 (B)	증·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출합계	1,242,756	1,319,521	76,765	6.2
재무활동	1,242,749	1,233,814	△8,935	△0.7
기금·특별회계용자지원	970,653	916,232	△54,421	△5.6
여유자금예치 (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)	272,096	317,582	45,486	16.7
투자기관금융지원	-	85,700	85,700	순증
공사직접용자	-	85,700	85,700	순증
행정운영경비	7	7	0	0
기금관리비	7	7	0	0